

Why CISG?

-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의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적용과 수출보험에의 영향 -

글 박근서 법규부



I. 검토배경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UN의 산하기구인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이 있는데 과연 이 기구가 무슨일을 할까 궁금해 한 적이 있다. 이 UNCITRAL이 유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¹⁾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가 가입,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되어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법으로써 적용되게 되었으며, 수출보험의 인수 및 보상심사에도 영향이 있게 되었다.

수출자가 수출보험에 부보하고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²⁾ 그러나, 만약 그 손실을 수출자가 야기한 경우, 즉, 수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³⁾ 예컨대, 수출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된 것이라면, 스스로 손해를 야기한 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라 면책하는 것이다.

수출보험의 보상 및 면책여부 판단은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그 심사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발생 시에는 수출자(또는 매입은행)가 신용장조건에 맞게 서류를 제시하였는지 판단하게 되며,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UCP)이다.⁴⁾ 즉 수출자와 개설은행간 법률관계는 UCP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무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또는 매입은행)가 수출계약에 맞게 수출을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수출자와 수입자간 법률관계는 그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무신용장거래에서 수출입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지만, 당사자가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⁵⁾

이와 관련, 최근 우리나라가 CISG에 가입함으로써 동 협약이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대하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CISG'란 약칭으로 불린다. CISG는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 의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간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상호의 증진을 추구하는 국제법이다. 실무에서는 CISG(씨아이에스지)로 불린다. CISG는 계약의 성립,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국제법이다. 1980년도 제정되었고 중국이 1988년에 가입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가입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2)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당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제7조(면책) 제2항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행의뢰자 포함),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실무상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엔 거의 100% UCP가 준거법이 된다. UCP는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였으며, '07.7월부터 UCP 600이 발효되었다. UCP는 비록 법은 아니지만,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 및 책임을 규율하고, 법원 및 중재원 등도 동 규칙과 그 해석례를 존중하여 판결 또는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규에서는 그 실질적 효력을 감안하여 준거규칙으로서의 UCP도 준거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5) 일반적으로 분쟁발생시 수출입자는 서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여 준거법이 되었다.⁶⁾ 이로써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로서 은행이 당사자로 개입하지 않는 수출입자간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되게 되었고, 무신용장거래를 많이 인수하고 있는 수출보험에 있어서도 중요한 규범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준거법의 문제, 물품매매법로서의 CISG의 간략한 소개⁷⁾, 그리고 수출보험에의 실무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적절한 준거법의 적용: 신용장거래 vs 무신용장거래

국제거래를 하는 수출자가 우리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엔 큰 문제가 없으나, 아예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값비싼 비용을 들여 국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한다면 심각한 손실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준거법을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준거법의 문제는 신용장거래인지 무신용장거래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신용장 거래: UCP, ISBP, 관례 등의 혜택

수출입자간 대금결제조건이 신용장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준거법과 실무관행을 파악하여 분쟁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신용장거래는 UCP를 준거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각국 법원의 UCP에 근거한 관례, 그리고 ICC의 유권해석을 담은 결정(ICC Opinions)들이 있어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객관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용장 수출대금이 미결제되어 이에 대해 수출자가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UCP와 ISBP에 따라 수출자가 신용장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맞게 수출하였는지 판단하게 된다. 신용장조건과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문상 거절이유를 비교하여, 수출자 또

는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개설은행(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한 것이 UCP 및 ISBP에 비추어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보상심사를 한다⁸⁾

따라서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출자가 기본계약(Underlying contract)상의 의무를 실제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또는 그 이행된 내용이 당사자를 만족시켰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⁹⁾ 따라서 수입자가 인도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은 대금미지급의 근거로서 효력이 없다. 공사 담당자는 그 주장의 당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고 검토해서도 안 된다.

● 무신용장거래: 준거법(규칙) 및 관례의 빈약

수출거래의 대금결제방식이 추심(D/A, D/P 등)이거나 단순송금방식거래(O/A, T/T 등)인데 준거법이 무엇인지 애매하거나 참조할 만한 관례들이 없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실무자들이 참조하는 각종 무역 관련 저서들 및 자료들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수출기업은 수출 거래 시 계약서상에 준거법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자가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수출입자간 부주의에 의해 준거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간단한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엔 준거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비밀비재하다.¹⁰⁾ 한편, 수출입자들이 서로 자기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타협이 안 되어 아예 준거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¹¹⁾ 또한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한국과 중국간 거래에서 미국 뉴욕주법을 준거법을 한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준거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무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준거법 결정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라, 실무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 준거법 및 준거법 조항,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준거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국제사법 제8조). 국내거래에서는 당연히 국내법이 준거법이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그 거래와 밀접한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며, 특히 분쟁발생시 준거법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예외적으로 수출자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준거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5조).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거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http://www.kcab.or.kr/>, 2007.10.16 기준).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히 작성한다 하더라도 해석상 의문이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는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 법률을 한국법, 영국법 등으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준거법 조항이다.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7) 우리나라에서는 물품매매법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부족하다. CISG와 같은 국제무역거래와 관련된 제 문제를 주로 무역학과에서 무역실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왔고, 법학과에서 국제거래법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빈약한 편이다. 우리나라법제상 물품매매계약을 특별히 규율하는 매매법을 별도로 두지 않고 민법의 총칙 및 채권편에서 일부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선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매매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CISG의 각 조항별 축조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실무 매뉴얼 형식의 축조식 가이드북을 추후 작업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8) UCP 600 Article 2.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일치하는 제시와 함은 신용장의 재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UCP 600 Article 7.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nominated bank or to the issuing bank and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issuing bank must honour....(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인 경우,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하여야 한다.)"

9)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계약관계를 참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UCP 600 Article 4 (Credits v. Contracts)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설사 이를 무시하고 근거계약참조규정을 삽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의 지급의무 발생요건인 일치하는 제시여부 판단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참조조항의 삽입의 효력은 무의미해진다.

10) 당사자간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 계약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Purchase Order로부터 수신표, 수백페이지의 정식 계약서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법문화상 한 장 정도의 매우 간단한 폼에 물품의 명세, 대금결제조건, 계약금액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계약서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준거법이나 분쟁해결조항 없이 간단한 계약만 한 경우 특히 문제가 된다.

11) 준거법 지정과 구별될 개념으로 중재조항이 있다. 중재조항은 분쟁해결 절차적인 측면에서, 당사자간 분쟁을 사법부인 법원이 아닌 중재인 또는 중재원에서 중재결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사전에 정하는 계약조항이다. 국제거래 실무상 비용적인 측면 및 분쟁해결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공정한 제3국의 중재원을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무이다. 그러나 준거법 지정은 당사자간 계약의 이행여부 등 당부를 판단하는 실체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재조항과 다르다.

II. CISG의 가입 및 실무적 적용

● CISG 가입현황

CISG는 80년도에 의결되어 88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CISG 가입신청서를 제출 CISG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되었다.¹²⁾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이 되었다.¹³⁾ CISG는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통일법으로서 '06. 12월 현재 70개국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국제무역의 4분의 3(75%)을 규율하고 있고, 가입국 현황을 지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으며,¹⁴⁾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 대부분이 CISG에 가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CISG 가입국 현황]



■ (검은색): 가입국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CISG는 우리나라 수출거래의 일반적인 준거법이 되며,¹⁵⁾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이든 무신용장이든,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및 의무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구제와 관련된 법률문제에는 CISG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¹⁶⁾

● CISG의 구성 및 규율범위

CISG는 총 4편(Par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the Contract), 3편 당사자의 의무의행(Obligations of the Parties) 및 불이행시 구제(Remedies for Breach of the other party)가 중요한 부분이다. 매도인과 매수인간 물품인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거래와는 다르게, 국제거래인 수출에서는 국제운송과 대금지급에 장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CISG는 이런 국제거래의 특성을 반영,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 당사자간 책임분담 및 협력을 강조하는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 CISG의 실무적 의의 내지 영향

최근 들어 신용장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또는 수출보험에 의한 신용위험 커버가 가능해짐을 이유로 신용장거래의 활용이 감소하고 추심(Collections) 또는 외상방식(Open Account) 등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Non-LC transactions)가 급증하였으며, 동 거래에서의 분쟁발생도 증가하고 있다.¹⁷⁾ CISG는 당사자가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적용된다.

CISG는 세부적인 규정들과 동 규정을 적용한 각 국가들의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어 무신용장방식거래에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¹⁸⁾ CISG는 물품매매거래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Sales Law(물품매매법)이다. 따라서 물품매매가 아닌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⁹⁾ CISG의 제3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불이행시 구제(Remedies) 부분은 25조부터 65조까지 무려 41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CISG 제정 이후 쌓여온 약 2000여 개의 각국 판례들은 각 규정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²⁰⁾

12)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법무부 2005년 : At the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which adopted the CISG, "62 states took part: 22 European and other developed Western states, 11 socialist, 11 South-American, 7 African and 11 Asian countries: in other words, roughly speaking, 22 Western, 11 socialist and 29 third world countries". E?rsi, 31 Am. J. Comp. L. 335 (1983). All of these "blocs" are represented in the List of Contracting States. The text the delegates to the Diplomatic Conference unanimously approved came into effect in 1988.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intro.html>)

13) 우리나라가 CISG에 가입한 것은 최근 일이지만, 그 이전부터도 무역실무부분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즉, 무역실무(또는 무역상무)부분에서 국제계약 부분에서는 CISG를 기본으로 하여 설명되고 있다. 즉, 계약의 청약 승낙,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 무역계약부분의 내용은 CISG의 규정내용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14) CISG에 대한 각종 자료는 Pace database on the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intro.html>) 참조하면 된다. 각종 입법과정자료, 판례, 주석, 관련 논문 등 광범위한 자료가 있다.

15)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2005, 법무부 2005년

16) 그러나, CISG상 규정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 신속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은 유익을 요한다. 예컨대, 수출계약상 물품인도조건을 INCOTERMS의 하 나인 FOB BUSAN으로 정한 경우, 물품의 인도방법과 비용의 부담문제는 CISG가 아닌 INCOTERMS 2000이 적용되며, 대금결제조건을 신용장으로 약정하면 선적서류의 제시와 대금결제부분에 대하여는 UCP 600이 적용된다.

17) 신승관, 수출입 결제방식 현황 및 변화요인 분석, 2005.2 (수출의 경우 신용장방식 비중이 1997년 43%에서 2004년 22%로 감소했으나 송금방식 비중은 동기간중 29%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수출입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크게 바뀐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보았다.

첫째, 수출상품 구조가 경박단소형의 IT관련 제품으로 크게 바뀐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송금방식을 선호

둘째, 대기업의 경우 과거 해외바이어와 직거래가 많았으나 최근 들면서 해외법인간의 Stock거래가 증가

셋째, 상품의 공급과잉으로 국제상품시장이 바이어 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뀐에 따라 해외바이어의 송금방식 요구가 증가

넷째,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간의 신용도 제고

다섯째,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라 신용장방식의 금융측면에서의 메리트 상실 등

18) CISG를 처음 제정당시부터 기입한 선진국들 및 중국은 CISG를 적용한 판례들을 축적하여 연구하여 왔다. 현재 약 2000여건의 판례가 영어로 요약되거나 전문이 번역되었으며, 우리나라 법무에서도 사례연구로 하여 2005년 및 2006년도에 판례 번역집을 발간한 바 있다.

19) 석광현, UN국제물품매매협약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http://cafe.naver.com/law8610>

20) CISG 관련 판례는 이탈리아에 소재한 UNIDROIT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전문 또는 요약문 형식으로 영문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http://www.unilex.info/>).

III. CISG 관련 보상사례 (적용대상거래 및 하자제기권 상실)

CISG는 수출거래에 대하여 지원되는 수출보험 인수와 보상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출보험 사고인 수입자의 대금지급 또는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수출입자 중 누구의 과실로 발생한 손실인가를 판단하는데 CISG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최근 공사 법 규부에서 검토된 CISG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한다.

수출거래 개요²¹⁾

구분	내용	비고
수출자	XX상사	
수입자(미국)	YY Fastening Systems	
결제조건	T/T 60 days	
수출물품	일반 건축용 못	목재주택에 사용하는 3인치 범용 못
계약서 존재여부	간단한 계약서	수입자가 서명한 Purchase Order 및 수출자가 서명한 Invoice는 존재
수입자의 샘플확인 여부	수입자가 확인	거래 시작시점('04.6월)에 수입자가 샘플 확인한 후 거래

사고개요

- '06.11월 이후 수입자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수출자는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며, 수입자는 End User로부터 Claim(길이가 짧은 못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수출자와 대금지급을 거부하였음.

구분	내용	비고
사고금액	US\$149천	만기도래 미결제건
Claim된 건의 선적일 및 결제일	① '06.9.14 ~ 11.12	- ① 및 ②에 대하여는 '06.11.28에 하자 제기
	② '06.9.21 ~ 11.19	
	③ '06.10.5 ~ 12.3	- ③ 및 ④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자통보 없이 미결제중
	④ '06.10.29 ~ 12.27	

- 수출자는 일부 못의 짧은 내용은 허용범위 이내이며, 이 하자는 2년 전 최초 거래 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수입자가 이제 와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함.

21) 최근 기사에서 법규부로 법률질의 되었던 사례에 대한 검토의견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실무사례의 답변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사의 질의요지

- 수출입자(한국, 미국)간 준거법 및 중재조항 합의 없이 구두계약으로 수출거래를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본 거래에 CISG가 적용된다면, 수입자가 제기한 하자내용(목재 건축용 범용 못 중 일부가 짧음)이 CISG 제35조 제2항 (a) 및 제3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부당한 하자제기인지 여부

법규부의 검토의견

가. 수출입자간 준거법에 대한 합의 없는 경우, CISG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의 준거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임 그러나 당사자가 준거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이고,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당사자 간 거래이며,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가가 CISG 체결국인 경우, CISG가 원칙적으로 적용됨(CISG 제1조).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 질의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못을 판매하는 물품매매계약이었으며, 양 당사자는 준거법에 대하여 정한 바 없었고, 양 당사자 소재국인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CISG 가입국임. 따라서 본건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CISG가 본건 수출거래의 계약 성립 및 이행여부 판단에 있어서 준거법으로 적용됨

나. 수입자가 제기한 하자가 CISG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한 하자인지

- 원칙적으로 수출자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상품명세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CISG 제35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만약 (당해)물품이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한 경우(소위 일반 사용목적 적합), 그 물품은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함(제35조제2항).

1)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2)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이하 생략)

- 따라서 인도된 물품이 계약상 정해진 규격 등과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예견된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 매수인은 그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하지 못함.
- 본건 수출거래에 있어 대상 물품이 범용 못이며, 일부 못의 길이가 약간 짧더라도 목조주택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임. 따라서 제35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수출자가 인도한 물품에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수출자가 계약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입자는 하자를 주장할 근거를 상실함.
- 수입자가 이미 계약체결시 그 하자가 존재함을 매수인이 이미 알았다면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됨(CISG 제35조 제3항). 본건에서 수입자는 본건 최초 거래시부터 일부 못의 길이가 짧았던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사료되므로, 더 이상 물품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다. 본건 하자통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하자통지권을 상실하여 본건 하자제기가 부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 설사 하자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수입자가 물품을 인도받아 검사 후 그 하자가 있음을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자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함. 즉,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고(CISG 제38조 제1항), 이러한 검사 시 불일치를 발견한 때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 매도인에게 불일치의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하자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함(제39조 제1항)²²⁾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 매수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하자를 제기하였는가 여부에 대해 CISG 관련 판례의 입장은,

22) UCP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7영업일 이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하자통보를 하지 않으면 하자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임.

그 하자 주장의 합리적인 기간은 구체적 사안(물품의 특징, 하자의 내용, 당사자의 입장, 무역관행 등)에 따라 판단되며, 본건 하자과 같이 물품외견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품검사 후 짧은 기간이내 라고 보고 있음.²³⁾

[CISG Advisory Council Opinion No. 2] 3.The reasonable time for giving notice after the buyer discovered or ought to have discovered the lack of conformity vari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some cases notice should be given the same day. In other cases a longer period might be appropriate. (중간 생략) Among the circumstances to be taken into account are such matters as the nature of the goods, the nature of the defect, the situation of the parties and relevant trade usages.

- 본건을 살펴보면, 수출입자간 거래 시작시점인 '04.6월에 수입자는 못 샘플을 확인하였고 그 후 2년 이상 총 US\$1,693천에 대하여 하자 제기 없이 결제하여 왔음. 수입자는 유독 본건 물품('06.9월선적분)에 대하여 만기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11.28일자에야 클레임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자를 제기한 것이 아님. 따라서 본건 수입자는 CISG에 따라 하자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본건 수입자의 하자 주장은 부당함.

IV. 맺음말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도 최근 CISG에 가입한 결과, 무신용장거래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준거법 문제가 명확해졌다. 수출보험 사고에는 대부분 당사자간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당사자의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CISG에 따라 그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CISG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CISG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무적용 그리고 공사업무에의 피드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공사의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²⁴⁾

CISG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제거래의 특성상 소송(Litigation)보다는 중재(Arbitration)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법원이 CISG를 실제로 적용하여 공식적으로 판례로까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인건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 심지어 중국에서조차 CISG에 대한 판례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왔으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 활용한다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23) 관련 판례는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제2판 오원석 역, 삼성사) 359면 참조.
24) CISG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검토해볼 만한 사례가 있는 경우 법규부에 법률질의를 하여 검토의견을 받으면 그 검토경험을 쌓게 되어 바람직할 것이다.